

충청북도 지식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지식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3월 08일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변경(안 제10조제3항, 제8항)
 - (위원장) 행정부지사 → 경제부지사
 - (간 사) 미래산업과장 →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정희)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,
- 제10조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 를 “경제부지사” 로, 같은 조 8항 중 “미래산업과장” 을 “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” 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